

벤처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,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 개발·조성·운영을 위한 부동산 등

### 3-15. 벤처기업 &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방세 과세특례



-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등 벤처기업육성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
-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및 창업보육센터용 부동산과 입주자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및 중과세율 적용배제
-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은 중과세율 적용 배제

벤처기업	벤처기업 육성지구 → 내 부동산 취득	취득세 50% 감면 재산세 50% 감면
벤처기업집적시설 개발 조성	부동산 취득 →	취득세 35% 감면 재산세 35% 감면
창업보육센터	부동산 취득 →	취득세 50% 감면 재산세 50% 감면
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	부동산 취득 →	취득세 75% 감면 재산세 100% 감면

####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

-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,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등 벤처기업 등이 사용할 부동산을 개발·조성, 취득, 분양, 임대, 직접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 일부 경감

지원대상	세부사항	지원내용	관련법령
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	개발·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거나 벤처기업이 직접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	취득세 35%감면 재산세 35%감면 (수도권외 지역 부동산 재산세는 60%감면)	지특법 제58조①
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	벤처기업이 해당 사업을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	취득세 50% 감면 재산세 50% 감면 (수도권외 지역 부동산 재산세 60% 감면)	지특법 제58조②
신기술창업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·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 하려는 자	취득하는 부동산(공장용 부동산 <sup>157)</sup> 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경우 포함)	취득세 50%감면 및 3년간 재산세 50% 감면 (수도권외 지역 부동산 재산세 60% 감면)	지특법 제58조③

157)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

지원대상	세부사항	지원내용	관련법령
창업보육센터사업자 <sup>158)</sup> 의 지정을 받은 자가	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	취득세 50% 감면 재산세 50% 감면 (수도권외 지역 부동산 재산세 60% 감면)	지특법 제60조③
	학교등이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고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	취득세 75% 감면 재산세 100% 감면	

## 유의사항

###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 추징

- 부동산을 취득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·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
- 부동산의 취득 후 5년 이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5년 이내에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
-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
-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·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
-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
- 최저한세 해당사항 없음
- 농어촌특별세 과세

## 절차 및 제출서류

-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시장(특별시·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)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\*

\* 신청기한 : (취득세)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, (재산세)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, (등록면허세) 등록을 하기 전까지

## 관련 법령

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58조, 제60조, 제180조, 제183조, 제184조,  
「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9조, 제126조, 제127조, 「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제9조, 제10조

158)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 제6조